**‘CCC’ 동아리 회칙**

**제1장 총칙**

**제1조(명칭)**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CCC(한국대학선교회)”라고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한국대학생선교회(이하 CCC)의 목적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, 스스로를 훈련하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, 또 이 운동을 다음 세대에 전수시키는 것이다.

**제3조(회원자격)** 본 동아리의 회원자격은 제3장 조 ‘회원 자격 및 의무’조항에 따른다.

**제4조(동아리 소재)**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 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1조(임원의 구성)** 본 동아리의 임원은 대표, 부대표, 총무, 회계. 서기로 정의하며, 각 호에 해당하는 책임을 가진다.

**(1) (대표)** 1인으로 하며 본 동아리를 대표하여 본회 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 및 통솔하며,

본 동아리의 각종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.

**(2) (부대표)** 1인으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(3) (총무)** 최대2인으로 하며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, 동아리 내\*외부의 전달사항을 작성, 정리하도록 하며,

필요시 공지 및 제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.

**(4) (서기)** 1인으로 하며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. 또한 본회의 운영의 제반 문서 일체를 기록, 정리, 보관한다.

**(5) (회계)** 1인으로 하며 본 회의 운영의 재정에 대한 장부 정리와 금전 출납을 담당한다.

**제2조(임원진의 임기)**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임원을 대신하여 임시임원이 선출될 경우,

임시직을 맡은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3조(임원진 선출 방식)** 임원진의 선출은 본 동아리 담당 간사와 前임원진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,

담당 간사가 출석한 임원진의 회의 하에 선출된다.

**제4조(집행부)** 본 동아리는 집행부를 구성하지 않고, 임원진이 집행부의 역할을 대신하며,

임원진은 집행부와 동일한 권리는 갖는다.

**제3장 회원의 자격 및 관리**

**제1조(자격)**

**(1)**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

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자

**(2)**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고, 특별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 사역을 하는

CCC의 조직, 규칙, 사역의 성격, 방법, 이념을 받아들인 자

**(3)** CCC 신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하고자 하는 자

**(4)** 숭실대학교 소속 학부, 대학원, 글로벌미래교육원, 음악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

**제2조(의무)** 본 동아리의 회원은 CCC의 모든 훈련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,

모든 규칙을 준수하며, 교육에 동참하고, 각종 행사 및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
**제3조(권리)** 본 동아리의 각종 행사 및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**제4조(가입)**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입원진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른다.

**제5조(탈퇴)** 본 동아리의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임원진에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**제4장 회의**

**제1조(정기회의)** 정기회의의 구성원은 담당 간사와 임원직을 담당하고 있는 자에 한 하여,

주 당 1회 주최를 원칙으로 하며, 본 동아리의 제반 사항을 토의 및 결의한다.

**제2조 [정기총회]**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2학기 시작하기 전 8월에 소집한다.

구성원은 담당 간사를 포함한 임원진으로 하며 결산, 임원선출, 회칙 개정을 토의 및 결의한다.

**제3조 [임시총회]** 필요시 대표나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 하되,

최소 2주전에 공고하여 임원들을 소집하고, 임원의 보궐선거 및 회칙 개정을 토의 및 결의한다.

**제6장 재정**

**제1조(재정)** 본 동아리의 재정은 헌금 및 후원금을 수입원으로 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비로 지출된다.

**제2조(회원회비)** 회원회비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.

**제3조(결산보고)** 회계는 임원회의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7장 부칙**

**제1조(회칙발효)**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정 통과 후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초판 [2020.03.09.]

**제2조(회칙개정)**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담당 간사가 출석한 임원회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,

임원의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할 수 있다.

**제3조(효력)** 본 회칙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정 통과 후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.